

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

□ 합격자 결정 기준

□ 1차전형(필기) 합격자 【100점 만점+(가점)】

- 1차 필기 점수(100점) + 가점 고득점순

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
□ 1차전형(서류) 합격자 【서류적부심사】

- 1차전형(필기) 합격자 중 자격요건 적합자 선발(적/부심사)

□ 2차전형(직무·역량면접) 합격자 결정 【200점 만점+(가점)】

- 2차전형 점수(100점) + 1차전형 점수(100점) +가점 고득점 순

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
□ 최초 3개월 인턴 추가 9개월 연장 결정 【신원조사, 신체검사】

- 인턴(최초 3개월) 종료 후 해당 인턴을 대상으로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 연장

□ 동점자 처리기준

- (1차전형 동점자) 1차 전형 중 필기시험 점수 → 법률상 가점 → 특별가점 → 경력 인정일수 순

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
- (합격예정자 동점자) 법률상 가점 → 2차전형 → 1차전형 → 경력 인정일수 순

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